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42,357,993	13,270,740
일반회계	424,495,646	12,734,869
특별회계	17,862,347	535,870
기타특별회계	17,862,347	535,870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1,354,836	40,645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3,575,858	107,276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033,658	61,010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158,338	4,750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6,220	1,987
드림빌특별회계	2,787,735	83,632
건축진흥특별회계	477,061	14,312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115,611	33,46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293,030	188,791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307,338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한다. (간주예산)